

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-56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 : 2019. 4. 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출사유

- 2019. 7. 1.일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폐지
 - 기금운용 기한 : 2019. 6. 30까지
- 기금조성액 34억 5,225만원은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으로 전출 처리(2019. 7. 1.일자)

(단위:천원)

합계	용자금			예치금		
	소계	회수시기경과 (채납액)	회수시기미도래 (용자금원금)	소계	정기예금	공금계좌
3,513,269	61,020	7,700	53,320	3,452,249	3,308,423	143,826

- 기존의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수입으로 처리

3.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조성)와 동 조례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

4. 첨부

- 201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

201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

I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II 기금 개요

- 설치목적
 -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기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향상 도모
- 설치년도 : 1996년
- 운용 경과
 - 기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통합하여 공금 계좌로 운영
 - 조례에 의거 우리은행(마포구청지점)과 용자금 관리 약정 체결
 - 용자액을 제외한 잔여기금을 정기에금으로 예치하여 기금 수입 증대
- 용자금 종류 :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

구 분	용 자 대 상	용자한도액
주민소득 지원금	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	3천만원
	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,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	
생활안정 자금	천재지변,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	2천만원
	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	
	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학자금	
	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	

용자대상 선정 조건

- 신청일 현재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 ※ 재산 기준 없음

용자조건 : 연 1% /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III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201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

○ 기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변경액	증 감	항목	기정액	변경액	증 감
합 계	3,500,463	3,452,249	△48,214	합 계	3,500,463	3,452,249	△48,214
전 입 금				비용자성사업비	840		△840
보 조 금				용자성사업비	200,000		△200,000
차 입 금				인력운영비			
용자금회수	16,700	6,680	△10,020	기본경비			
예탁원금회수				예탁금			
예치금회수	3,424,402	3,414,387	△10,015	예치금	3,299,623		△3,299,623
예 수 금				차입금 원리금상환			
이자수입	59,361	31,182	△28,179	예수금원리금상환			
기타수입				기금전출금	0	3,452,249	3,452,249

○ 수입 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감(△)	산출내역
장	관	항	목				
세 입 합 계				3,500,463	3,452,249	△48,214	
200 세외수입				59,361	31,182	△28,179	
210 경상적세외수입				59,361	31,182	△28,179	
216 이자수입				59,361	31,182	△28,179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			58,631	31,182	△27,449	
216-03 통화금융기관 용자금회수이자수입				730	0	△730	
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				3,441,102	3,421,067	△20,035	
710보전수입등				3,441,102	3,421,067	△20,035	
713 용자금 원금수입				16,700	6,680	△10,020	
713-0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회수수입				16,700	6,680	△10,020	
714 예치금회수				3,424,402	3,414,387	△10,015	
714-01 예치금회수				3,424,402	3,414,387	△10,015	

○ 지출 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직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감(△)
세출총계						3,500,463	3,452,249	△48,214
기초생활보장						3,299,623	3,452,249	152,626
재무활동(복지행정과)						3,299,623	3,452,249	152,626
보전지출(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)						3,299,623	0	△3,299,623
여유자금예치						3,299,623	0	△3,299,623
602 예치금						3,299,623	0	△3,299,623
01예치금								
1)예치금						3,299,623	0	△3,299,623
내부거래지출						0	3,452,249	3,452,249
내부거래지출						0	3,452,249	3,452,249
702 기금전출금						0	3,452,249	3,452,249
기금전출금						0	3,452,249	3,452,249
사회복지일반						200,840	0	△200,840
주민소득향상						200,840	0	△200,840
주민소득지원(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)						200,840	0	△200,84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용자사업						200,840	0	△200,840
201 일반운영비						840	0	△840
01 사무관리비								
1)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						840	0	△840
501 용자금						200,000	0	△200,000
01 민간용자금								
1)용자금						200,000	0	△200,000

□ 기금 운용 변경 사유

○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

- 기금 폐지 사유

- 기금의 목적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지만, 여신기준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2013년부터 용자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(타구도 유사함)로 기금의 존치 보다는 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함

- 기금 운용 기한 : 2019. 6. 30.까지 운용

○ 기금 운용 폐지에 따라 기금조성액 34억 5,225만원은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으로 전출 처리

○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, 회수된 용자금은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에 추후 수입 조치함